

##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

신고번호

2023-건축과-가설건축물축조신고-1

건축주

계룡건설산업(주)

대지위치

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

지번

195

\* "지번"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, 「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.

전체개요	건축면적			연면적 합계		
	9 m <sup>2</sup>			m <sup>2</sup>		
동별개요	등별	구조	용도	건축면적(m <sup>2</sup> )	연면적(m <sup>2</sup> )	지상층수
	1	컨테이너조	가설건축물	9	9	1

존치기간

2026년 01월 16일

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3조에 따라 교부합니다.

2023년 01월 20일

강북구청장



유의사항

「건축법 시행령」  
제15조  
제15조의2

·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